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82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송갑석 · 이수진 · 인재근

문진석 • 어기구 • 윤후덕

이장섭 · 황운하 · 신정훈

강훈식 · 이형석 · 허 영

전용기 · 이규민 · 김경만

맹성규·장철민 의원

(179]

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, 레이저 가상 키보드, 홀로 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.

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·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, 관련 산업의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.

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 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, 화상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의2 신설).
- 나.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을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(안 제2조제1호).
- 다.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·사용
 ·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
 포함되도록 함(안 제2조제7호나목 신설).
- 라. 현행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'물품'으로만 한정하였으나, 화상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'물품' 관련 조문을 '물품등'으로 개정함(안 제34조 등).

법률 제 호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물품[물품의 부분(제42조는 제외한다)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호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물품(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나. 글자체
- 다. 화상(畵像)(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것 또는 그 기능 발휘의 결과로 표시되는 것에 한정하고,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2의2. "화상"이란 기술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도형·기호 등을 말한다.

제2조제7호 중 "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"을 "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

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

나. 디자인의 대상이 글자체 또는 화상인 경우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생산·사용·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 위하여 청약(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나,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·수출·수입하거나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

제34조제3호 중 "물품"을 "물품, 글자체 또는 화상(이하 "물품등"이라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물품의"를 "물품등의"으로, "형상만으로"를 "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으로"로 한다.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되는 물품"을 각각 "되는 물품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물품으로"를 "물품등으로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물품에"를 "물품등에"로 한다.

제41조 전단 중 "물품에"를 "물품등에"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"(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)"을 "(한 벌의 물품등의 디자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물품이"를 "물품등이"로, "물품으로"를 "물품등으로"로, "물품의"를 "물품등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

중 "물품의"를 "물품등의"로 한다.

제63조제2항 중 "물품"을 "물품등"으로 한다.

제113조제3항 중 "물품의"를 "물품등의"로 한다.

제114조 중 "관한 물품의"를 "관한 물품등의"로 한다.

제127조제1항제4호 중 "되는 물품"을 "되는 물품등"으로 한다.

제161조제1항의 부분 중 "물품에는"을 "물품등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관련된 물품의"를 "관련된 물품등의"로 한다.

제175조제2항제6호 중 "되는 물품"을 "되는 물품등"으로 한다.

제179조제3항 중 "되는 물품"을 각각 "되는 물품등"으로 한다.

제196조제1항 중 "정하는 물품"을 "정하는 물품등"으로 한다.

제214조 중 "물품"을 "물품등"으로 하고, "물품의"을 "물품등의"로 한다.

제215조제1호 중 "물품"을 각각 "물품등"으로, "물품의"를 "물품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물품"을 "물품등"으로, "물품을 생산·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"를 "물품등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"로, "물품이"를 "물품등이"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했 혅
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디자인"이란 물품[물품의 부분 1. -----다음 각 목의 어 (제42조는 제외한다) 및 글자체 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형상 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 하다.

<신 설>

2. (생략) <신 설>

- 3. ~ 6. (생략)
- 7. "실시"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7. "실시"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생산・사용・양도・대여・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정

아

개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----
- 가. 물품(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나. 글자체
- 다. 화상(畵像)(기기의 조작에 이 용되는 것 또는 그 기능 발휘의 결과로 표시되는 것에 한정하 고,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. 이 하 같다)
-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"화상"이란 기술적인 방법으 로 표현되는 도형 · 기호 등을 말 한다.
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 따른 행위를 말한다.

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 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를 말한 다.

<신 설>

- 가.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인 경우

 그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
 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

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
 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

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
 는 행위
- 나. 디자인의 대상이 글자체 또는 화상인 경우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생산·사용·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(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나,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·수출·수입하거나 그 글자체 또는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

제34조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제34조(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

디자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디자인)
	-1/1 4/
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	
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	
을 받을 수 없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<u>물품</u> 과	3물품,
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	글자체 또는 화상(이하 "물품등"
인	<u>이라 한다)</u>
4. <u>물품의</u>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	4. <u>물품등의</u>
불가결한 <u>형상만으로</u> 된 디자인	<u>형상·</u>
	모양・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
	<u> 것만으로</u>
제37조(디자인등록출원) ① 디자인	
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	
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	
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디자인의 대상이 <u>되는 물품</u> 및	3
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(이하	<u> </u>
"물품류"라 한다)	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	②
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	
여야 한다.	
1. 디자인의 대상이 <u>되는 물품</u> 및	1
물품류	<u> </u>

2. • 3. (생략)			2. • 3. (ই	현행과	같음)	
③ (생 략)			③ (현행	과 같음	$\left(\frac{O_{1}}{I}\right)$	
④ 디자인일부	-심사등록출원을	- 할	4			
수 있는 디자인	<u> </u> 으는 물품류 구분	분 중				
산업통상자원투	브렁으로 정하는	: 물				<u>물</u>
품으로 한정한	다. 이 경우 해도	당 <u>물</u>	품등으로			
<u>품에</u> 대하여는	: 디자인일부심	사등	<u>물품등</u>	<u>-에</u>		
록출원으로만	출원할 수 있다.					·
⑤ (생 략)			⑤ (현행	과 같음	$\left(\frac{2}{1}\right)$	
제41조(복수디자	인등록출원) 디	자인제]]41조(복수	-디자인]등록출원)	
등록출원을 하	려는 자는 제40)조제				
1항에도 불구히	하고 산업통상자	·원부				
령으로 정하는	물품류 구분	에서				
같은 물품류에	속하는 물품이	<u>네</u> 대				
하여는 100 이	내의 디자인을	1디			물품등어	<u>]</u>
자인등록출원(이하 "복수디자	인등				
록출원"이라 형	한다)으로 할 수	= 있				
다. 이 경우 1	디자인마다 분	·리하				
여 표현하여야	한다.					
제42조 <u>(한 벌의</u>	물품의 디자인) ① 저]]42조 <u>(한</u>	벌의	물품등의	디자인)
2 이상의 <u>물품</u>	<u>·이</u> 한 벌의 <u>물</u>	품 <u></u>	1	물	-품등이	물
로 동시에 사	용되는 경우 그	1 한	품등으로			
벌의 <u>물품의</u> 디	기자인이 한 벌	전체			<u>물품등</u> 9	1
로서 통일성이	있을 때에는 1	.디자				
인으로 디자인	등록을 받을 수	는 있				
다.		-				_
(2) 제1항에 따	·른 한 벌의 <u>물</u>	·품의	(2)			<u>물</u>

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	품등의
한다.	
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 (생 략)	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	②
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	
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	
일련번호,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	
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	물품등
적어야 한다.	,
제113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	제113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
권) ①・② (생 략)	권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	3
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	
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<u>물품의</u> 폐	물품등의
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	
거,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	
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.	
제114조(침해로 보는 행위) 등록디	제114조(침해로 보는 행위)
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	
<u>관한 물품의</u> 생산에만 사용하는	<u> 관한 물품등의</u>
물품을 업으로서 생산·양도·대	
여・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	
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	
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	
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	
본다.	
제127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	제127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

대한 심판청구방식) ① 제119조	대한 심판청구방식) ①
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	
정,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	
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	
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	
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	
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특허심판	
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	
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	
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	
게 알려야 한다.	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디자인의 대상이 <u>되는 물품</u> 및	4 <u>되는 물품</u>
물품류 5. ~ 7. (생 략)	<u>등</u> 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3. 7. (한 8의 분급) ② (현행과 같음)
제161조(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	
인권의 효력 제한) ① 다음 각 호	인권의 효력 제한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	
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	
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	
거나 취득한 <u>물품에는</u> 미치지 아	물품등에는
니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	②
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	

니한다.	
1. (생 략)	 1. (현행과 같음)
2. 등록디자인과 <u>관련된 물품의</u> 생	2 <u>관련된 물품등의</u> -
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	
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	
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·	
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	
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	
제175조(국제춬워의 젘차) (T) (샛	 제175조(국제출원의 절차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디자인의 대상이 <u>되는 물품</u> 및	6 <u>되는 물품등</u> -
물품류	
7. · 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79조(국제디자인등록출원) ①・	제179조(국제디자인등록출원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	③
는 헤이그협정 제1조(viii)에 따른	
국제등록부(이하 "국제등록부"라	
한다)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	
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	
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	
다), 도면, 디자인의 대상이 <u>되는</u>	<u>되는</u>

물품, 물품류, 디자인을 창작한 사	물품등
람의 성명 및 주소, 디자인의 설명	
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	
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	
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	
말한다), 도면, 디자인의 대상이	
되는 물품, 물품류, 디자인을 창작	되는 물품등
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, 디자인의	
설명으로 본다.	
제196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)	제196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)
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	①
을 헤이그협정 제17조(2)에 따라	
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	
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	
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	<u>정하는 물품등</u>
은 협정 제7조(1)에 따른 표준지	
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	
(2)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	
제사무국에 내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14조(디자인등록표시) 디자인권	제214조(디자인등록표시)
자・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	
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<u>물품</u>	물품등-
또는 그 <u>물품의</u> 용기나 포장 등에	<u>물품등의</u>
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.	
	<u>.</u>
제215조(허위표시의 금지) 누구든지	제215조(허위표시의 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<u>물품</u>,

- 1.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<u>물품</u>,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<u>물품</u> 또는 그 <u>물품의</u>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 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
- 2. (생략)
- 3.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,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·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하는 행위

1	물품
<u>ㄷ</u>	물
품등물품등의	
O /되케기 기 ()	
2. (현행과 같음)	
3	물품
<u>등</u>	물
<u>등</u> 품등을 생산·사용·양도·	
	대여
— 품등을 생산·사용·양도·	대여 방법
	- 대여 방법
	- 대여 방법